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 A-1(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키움 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 A-1(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 A-1(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26년 10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05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4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 서면문서: 키움투자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키움투자자산운용(주) 홈페이지 (www.kiwoom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므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10.18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54577]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납입금액의 1.0%	2.045	1.1	0.9	2.139	316	544	783	1,299	2,830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순 추정치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로 인한 실제발생 비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5.10.19~ 2026.10.18	최근 2년 2024.10.19~ 2026.10.18	최근 3년 2023.10.19~ 2026.10.18	최근 5년 2021.10.19~ 2026.10.18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2006.2.13	-11.87	0.55	4.10	-7.07	2.30
참조지수	2006.2.13	-9.81	2.55	7.80	-2.01	4.54
수익률 변동성	2006.2.13	13.30	14.81	14.69	17.32	20.43

(주1) **참조 지수: 2023년 04월 18일 이후: MSCI B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21년 10월 29일~2023년 04월 17일: MSCI BR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18년 05월 02일~2021년 10월 28일: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지수 5%]
[2018년 05월 01일 이전: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참조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상기 참조지수와 대비하여 측정되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은 참조지수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성과가 참조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참조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또는 섹터에 투자합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대석	1983	팀장	32개	14,773	-	-	6.36	10.33	2년 11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솔루션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환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가 등록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일괄 회수되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오류 발생 시기와 배상 시기상의 차이, 그에 따른 적용환율의 차이, 해당

		기간동안의 운용역 재량에 따른 일상적인 운용행위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오류에 따른 투자자의 실제 손실액과 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한정된 지역, 업종, 시장이나 개별 포지션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치를 크게 상향 혹은 하향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순자산총액:직전일의 자산총액-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4조 좌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05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 시 공 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5457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4조좌

이 투자신탁은 추가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별도의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 절차 및 방법: 특이 사항 없음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5457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02.13.	최초설정
2007.08.20.	투자신탁약관 변경(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
2009.05.0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변경: 슈로더 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1) →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A-1(주식)
2010.03.16.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등)
2010.04.2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판매보수 인하 등)
2013.05.30.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부책임운용인력 병기)
2014.06.10.	운용전문인력 공시관련 변경(단독운용 체제로의 변경에 따른 해당 운용인력 기재)
2016.02.25.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등
2016.07.02.	펀드 위험등급 분류 체계 개편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5등급 체계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변동성 기준 6등급 체계) 및 펀드 위험등급 변경(1등급 => 2등급)
2016.08.29.	해외위탁운용인력 변경
2017.01.23.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영업일 기준 변경[한국거래소의 개장일 ➔ 판매회사의 영업일])
2017.06.23.	모펀드 일부 투자대상자산 투자비율 조정
2017.08.25.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환매수수료 일괄 면제 적용)
2018.05.02.	모펀드 유형 변경(주식형->재간접형)에 따른 모펀드 투자 비율, 투자제한 및 펀드명(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등 변경, 참조지수 및 환헤지 방법 변경, 보수 인하(운용보수: 연0.90%->연0.89%, 신탁보수: 연0.05%->연0.04%, 사무보수: 연0.02%->연0.015%),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등
2019.01.15.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영민=>장정주)
2019.08.28.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항 반영
2020.02.25.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등
2021.03.11.	투자신탁 결산일 변경(11/20=>9/30) 및 회계기간 명확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반영 등
2021.10.29	참조지수 변경 등[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 지수 5% => MSCI BR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22.08.26	운용전문인력 변경(장정주=>김락),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업데이트등

2022.11.25.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추가 등
2023.04.18	피투자 펀드 관련 내용 변경[(피투자 펀드명: Schroder ISF BRIC(Brazil, Russia, India, China) => Schroder ISF BIC(Brazil, India, China)), 피투자 펀드 참조지수 변경 등]에 따른 변경[(펀드명: 슈로더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 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참조지수: MSCI BRIC Net TR Index10/40 (USD) 95% + Call 5% => MSCI B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5%), 투자목적 등], 환매대금 지급일정 단축[오후 5시 이전(후): 제4(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10)영업일 대금 지급 => [오후 5시 이전(후): 제4(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8(9)영업일 대금 지급],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명 및 주소 변경 등
2024.11.29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2024.03.01 시행)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 기타 주석문구 및 펀드 위험(재간접투자위험) 내용 수정 등
2025.11.21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소득세법 개정사항(외국납부세액) 반영 등
2025.12.18	– 분할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변경(슈로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 투자신탁 명칭 변경(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증권자투자신탁A-1(주식-재간접형))
2026.11.05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실제 수익률 변동성 34.20% → 32.57%)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 타워 12 층 (대표전화: 02-789-03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10.18 기준)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역	운용사	

			집합 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대석	1983	팀장	32개	14,773	-	-	6.36	10.33	*운용경력: 2 년 11 개월 (2010.07. ~ 2023.08.) ABL 생명보험 자산운용실 변액계정운용부 (2023.09.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솔루션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솔루션운용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6)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동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김영민	2014.06.10 ~ 2019.01.15
장정주	2019.01.15 ~ 2022.08.26
김락	2022.08.26 ~2025.12.17
이대석	2025.12.18 ~ 현재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장정주	주1)2012.8.1 ~ 주2)2014.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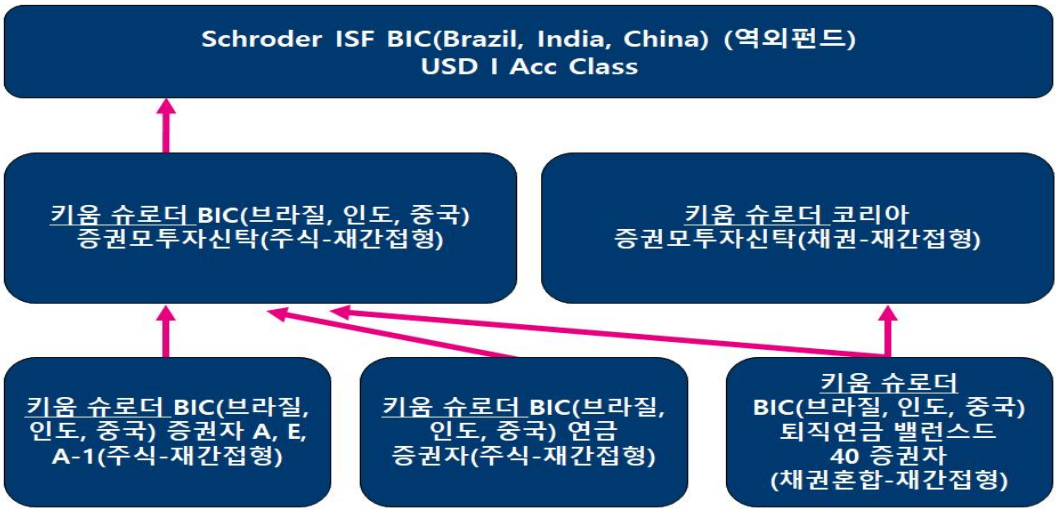
주1) (팀)공동 운용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공시기준 변경(기업공시서식 개정)일인 2012년8월1일자로 부책임운용인력 운용개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14년 6월 10일자로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에서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다.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된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ISF BIC(Brazil, India, China)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당사는 피투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하위집합투자업자 포함)의 글로벌 운용경험과 운용업력, 피투자펀드의 설정규모, 운용성과,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펀드로 "Schroder ISF BIC(Brazil, India, China)"를 선정하였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인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은 광범위한 글로벌 리소스를 활용하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투자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커버리지 및 오랜 기간의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입니다.
- 따라서 당사는 전문적인 산업 및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여, 브라질, 인도 및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 방법]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펀드의 제안서 및 투자설명서 등의 기본정보 및 자료를 전달받고 확인하였으며, 화상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세스, 운용성과, 운용계획,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펀드의 주요 기간별 성과 분석자료 및 운용팀의 코멘터리, 포트폴리오 설계 프로세스, 이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리서치 역량, 펀드의 전망 등에 중점을 두어 검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 모투자신탁	100% 이하	**키움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4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내지 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 키움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1)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채권	40% 이하	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으로서 잔존만기 1 년 이내인 것. 단,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에 한함.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순자산 총액의 10% 이하(위험회피 거래를 제외함)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헤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환율위험헤지목적의 투자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4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 내역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5) 신탁업자와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내지 2),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 내지 2), 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나. 투자 제한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 키움슈로더 BIC(브라질, 인도, 중국)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투자증권 등(1)	-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 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호 나목의 집합투자 증권은 제외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등(2)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2011년 2월 3일까지는 가목의 투자비율까지 투자 가능),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제18조제3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 제 19 조제 2 호, 제 19 조제 7 호, 제 19 조제 9 호 내지 제 11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 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슈로더BIC(브라질, 인도, 중국)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 상기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펀드 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dsab005/main.do#fundcik)에 게시된 관련 문건을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3)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및 투자전략

※ 본 항목에 기재된 집합투자업자등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등을 지칭합니다.

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명칭	Schroder ISF BIC (Brazil, India, China) (Class I Accumulation USD) -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된 슈로더 인터내셔널 셀렉션 펀드(Schroder International Selection Fund)의 하위 펀드
투자목적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
설정일	2005년 10월 31일
규모	USD 3억5,217만(한화 4,775억원), 2026년 9월말 기준

운용회사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상기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 SICAV(변동 자본투자회사)형태로 설정되어 룩셈부르크 감독기관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www.cssf.lu)]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공모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펀드 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dsab005/main.do#fundcik)에 게시된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②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주요 투자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브라질, 인도 및 중국 (BIC) 기업들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자본증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의 최소 2/3 이상을 브라질, 인도 및 중국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중국 B 주식과 중국 H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순금액 기준) 자산의 20% 미만을 후강퉁 및 선강퉁을 매개로 직접 또는 (참여증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A 주식, 과창판 및 ChiNext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1/3까지 다른 증권(다른 자산군 포함), 국가, 지역, 산업 또는 통화, 투자펀드, 워런트 및 단기금융 투자자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및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효율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 상기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주요 투자전략 등은 참조를 위한 투자 예시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수시로 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펀드의 운용, 자산배분 및 성과와 변동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상기한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상세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펀드 공시 사이트(http://dart.fss.or.kr/dsab005/main.do)에 게시된 관련 문건을 반드시 참조하신후 투자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브 라 질	
인구	2억 1,336만명 (2025년 수치 / 2026년 4월 발표 기준)
화폐단위	브라질 헤알 (BRL)
GDP	2조 2,799억 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4월 발표 기준)
1인당 GDP	10,686 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4월 발표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	2.3% (2025년 수치 / 2026년 4월 발표 기준)
산업구조	1차 산업 7%, 2차 산업 25%, 3차산업 68%
주요 수출품목	원유, 대두, 철광석, 설탕, 소고기 등 농산물 및 광물 중심의 원자재
주요 수입품목	디젤유, 면역물품, 터보제트 부품·엔진, 원유, 화물차, 비료 등
인도	
인구	14억 6,390만명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화폐단위	인도 루피 (INR)
GDP	4조 1,080억 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1인당 GDP	2,878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	7.6%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산업구조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등
주요 수출품목	광물성 연료 에너지, 귀석·반귀석,귀금속, 전기기기TV·VTR, 보일러 기계류, 의료용품 등
주요 수입품목	광물성 연료 에너지, 전기기기TV·VTR, 귀석·반귀석,귀금속, 보일러 기계류, 유기화합물 등

중 국	
인구	14억 490만 명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화폐단위	위안 (CNY)
GDP	20조 100억 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1인당 GDP	14,235 달러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	5% (2025년 수치 / 2026년 2월 발표 기준)
산업구조	제1차 산업(7.1%), 제2차 산업(39.9%), 제3차 산업(53.0%)
주요 수출품목	전기전자, 집적회로, 건축자재, 의류, 방직 및 직물제품, LCD 등
주요 수입품목	전기전자, 원유, 집적회로(IC), LCD, 철광석, 농산품 등

주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주 2) 상기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향후 결과를 보장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제현황은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상기의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참조지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참조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조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시장 상황,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조 지수의 등장 및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참조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참조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의 변경시에는 해당 내역을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지수: MSCI B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브라질, 인도, 중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가 발표하는 미달러화표시 지수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상기 참조지수와 대비하여 측정되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은 참조지수의 구성요소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에 따라 투자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성과가 참조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사항도 가지지 않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참조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또는 섹터에 투자합니다.

※상기 참조지수는 단순한 기준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등의 요소는 반영되지 않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운용은 본 참조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참조지수의 성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참조지수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한 단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자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 등의 요소는 참조지수 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종가, 환율 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5)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법 및 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 · 변경하며 자산별 ·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부서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비교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② 환헤지 방법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혼란 발생시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헤지거래가 일시적으로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지 대상금액과 헤지수단의 거래단위의 차이로 인해 일부 투자금액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달러화 표시 자산 이외의 기타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하여는 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통화와 헤지통화간의 상이로 인해 투자대상국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헤지가 되지 않는 통화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③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는 외화자산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④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헤지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헤지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하여 외화자산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으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헤지에서 환손실이 발생하나 외화자산의 상승으로 상쇄될 수 있어 펀드 수익률을 환율 변동으로부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⑤ 유동성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

이 집합투자기구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UCITS(EU 공모펀드 기준) 규정에 의한 위험분산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로서 룩셈부르크에 등록되어 룩셈부르크 금융 감독기관 CSSF의 감독 하에 운용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명세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 등으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환매연기기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⑥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험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를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고서를 월간 단위로 제공받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결과 및 분석, 주요 보유종목 및 편입 비중, 시장분석 및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혹은 이벤트 발생시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Schroder ISF BIC(Brazil, India, China)'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 운용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상기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을 포함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의 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브라질, 인도, 중국 기업의 주식 및 주식관련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해외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증권의 가격 변동, 금리, 환율등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내외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마켓의 경우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이 더 심하므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 국제 경제전망, 금리변동, 환율변동등 해외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변화, 채무불이행등 개별기업의 다양한 고유위험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고,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환매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환매도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에서 기준가격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가 등록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일괄 회수되어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 오류 발생 시기와 배상 시기상의 차이, 그에 따른 적용환율의 차이, 해당 기간동안의 운용역 재량에 따른 일상적인 운용행위 결과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내·외 변수의 영향으로 피투자펀드의 기준가 오류에 따른 투자자의 실제 손실액과 배상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을 부담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재산은 외화표시 증권 또는 하위 집합투자증권 등의 표시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위험 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위험 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 환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의 평가금액(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에 대하여 100% 수준으로 원/달러 선물환 등을 통해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 등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투자 목적 등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등의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하며 평균 이상의 변동성과 손실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예상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헤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파생상품계약이나 합성금융상품 등의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 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 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등의 악화에 따라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경우, 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불이행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발행인이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 ·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정치, 법률, 거래상대방, 운영,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한정된 지역, 업종, 시장이나 개별 포지션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가치를 크게 상향 혹은 하향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환경적/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회사, 산업 또는 섹터에 제한적인 익스포저를 갖게 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특정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산에 대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보다 저조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특정 투자자의 신념과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상황 또는 유럽공동체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전략등에 반하는 설립지 국가의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조세 제도 포함), 유럽공동체 규정의 변경에 따른 투자제한사항의 변경 등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해외 집합투자업자(하위 집합투자업자 포함)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 인력의 부도덕한 행위 및 빈번한 교체,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들이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을 결정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해외 운용사의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및 IGA에 따라 투자자가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과 같은 특정인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다른 법령에 비해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후강퉁 및 선강퉁을 통한 중국A주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및 선강퉁(Shenzhen-Hong 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은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시장 간 주식 교차거래를 목적으로 SEHK(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HKSCC(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또는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와 ChinaClear(China Securities Depository and Clearing Corporation Limited)가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은 상하이증권거래소나 선 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을 홍콩 소재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는 QFII와 RQFII 제도에 추가하여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과 선강퉁(Shenzhen-HongKong Stock Connect)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수반됩니다: · 일반위험: 관련 규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하위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요하는데, 그 국경간 거래 성격으로 인하여 운영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홍콩 및 상하이 시장 또는 홍콩 및 센젠 시장 양쪽에서의 거래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 청산 및 결제 위험: HKSCC와 ChinaClear는 청산 연결망을 구축하였으며 국경간 거래에서의 청산과 결제를 용이하기 하기 위하여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됩니다. 어느 한 쪽의 시장에서 발생한 국경간 거래에 관하여, 해당 시장의 결제기관은 한쪽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과 거래를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대방 결제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를 완성할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 법적 소유권/실제 소유권: 증권이 외국에서 보관될 경우, 현지 증권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aries), HKSCC 및 ChinaClear가 부과하는 의무 요건과 관련된 특정 법적 소유권/실질 소유권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다른 이머징 시장이나 저개발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권에 관한 법적/공식적 소유권과 실질소유권 기타 이해관계에 대한 법제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또한 HKSCC는 명의대리인으로서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실질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권을 집행하거나 혹은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권리를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의 장부상 주주(registered holder)인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이 해당 증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이 해당 명의대리인이나 보관기관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자산풀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혹은 실질소유자가 동 증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와 보관회사는 이러한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 HKSCC를 통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HKSCC가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및 그 보관회사가 HKSCC와 어떠한 법률 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HKSCC의 이행이나 도산으로부터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경우 HKSCC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ChinaClear의 불이행 발생 시, HKSCC의 의무는 청산 참가자들과 체결한 시장계약에 따라 청산 참가자들의 청구를 지원하는데 국한됩니다. HKSCC는 선의로 가능한 법적 통로를 통해 또는 ChinaClear의 청산을 통해 ChinaClear로부터 미상환 주식과 현금을 회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펀드는 손실 전액을 회복할 수 없거나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해 보유한 증권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수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운영위험: HKSCC는 홍콩 시장 참가자들이 체결한 거래와 관련한 청산, 결제, 명의대리인 기능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일부 매매 제한을 포함한 중국의 규제는 이러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매각 시 투자중개업자에게 주식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펀드는 적시에 중국 A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쿼터 제한: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한 교차거래 시스템은 쿼터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펀드가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을 통해

	적시에 중국 A주식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상: 펀드는 현지 투자자 보상 제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은 중국과 홍콩 시장이 거래를 위하여 개장한 날로서 양쪽 시장에서 은행이 해당 결제일에 개점한 날에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의 일상적인 거래일에 펀드가 중국 A주식의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강퉁과 선강퉁(Stock Connect)에서 위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 동안 펀드는 중국 A주식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선강퉁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소형주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형주 투자에 따른 위험이 수반됩니다.
중소기업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oard), 과창판 (STAR Board) /또는 ChiNext 시장과 관련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SSE”)의 중소기업(“SME”)판, 과창판(“STAR Board”) 및/또는 SZSE의 선강퉁을 통해 ChiNext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판이나 과창판 및/또는 ChiNext 시장에 대한 투자는 펀드 및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위험이 적용됩니다: · 높은 주가 변동성: 중소기업판, 과창판 및/또는 ChiNext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보통 신생 기업의 특성을 가진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주가 및 유동성에 대해 높은 변동성을 가지며, SZSE나 SSE의 주시장(main board)에 상장된 회사들보다 높은 위 험과 회전율을 가집니다. · 과대평가 위험: 중소기업판, 과창판 및/또는 ChiNext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높은 가치평 가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 규제 차이: ChiNext 시장 및/또는 과창판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규정과 규제는 수익성과 주식자본 측면에서 주시장 및 중소기업판의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 상장폐지 위험: 중소기업판, 과창판 및/또는 ChiNext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보다 통상적이고 빠른 속도로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 다.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상장폐지될 경우, 펀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집중도 위험 (과창판에 적용): 과창판은 신설된 시장으로 초기 단계에는 상장된 기업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펀드가 과창판에 투자하면 적은 수의 주식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펀드가 높은 집중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투자위험 및 중국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관련 위험	투자자는 중국시장에 특정된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 본토의 정치, 사회, 경제 정책 변경이 중국시장에 투자한 펀드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및 법률 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중국의 회계기준과 관행은 국제회계기준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증권의 결제와 결제청산 제도는 아직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아 더 큰 오류나 비효율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의 과세 제도 변경이 투자원금의 회수와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 주식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의 조세 지위와 관련하여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중국 세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급 적용하여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방식은 선진국들과 달리 일관되거나 투명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거주 법인이 발행한 A주식과 B주식을 외국 법인 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는 10% 자본소득 원천징수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재까지 징수된 바 없으며, 그 징수 시기, 소급 적용 여부와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 후 중국 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및 기타 지분 투자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본소득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제의 일몰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이후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변동사유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과세준비금을 위한 적립은 하지 아니합니다. 향후 이 투자신탁(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관행의 변화 징후나 중국 과세당국의 추가 지침의 발표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그 자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중국 정부의 과세방침 발표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과세준비금의 유보 및 적립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후강퉁(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및 선강퉁(Shenzhen-HongKong Stock Connect)을 통해 외국 투자자(본 펀드 포함)가 실현한 중국 A주식의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중국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사업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과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를 해당 상장기업을 통해 관할 중국 과세당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지의 조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해당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정하고 있을 경우 과다 납부된 중국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과세당국에 그 차액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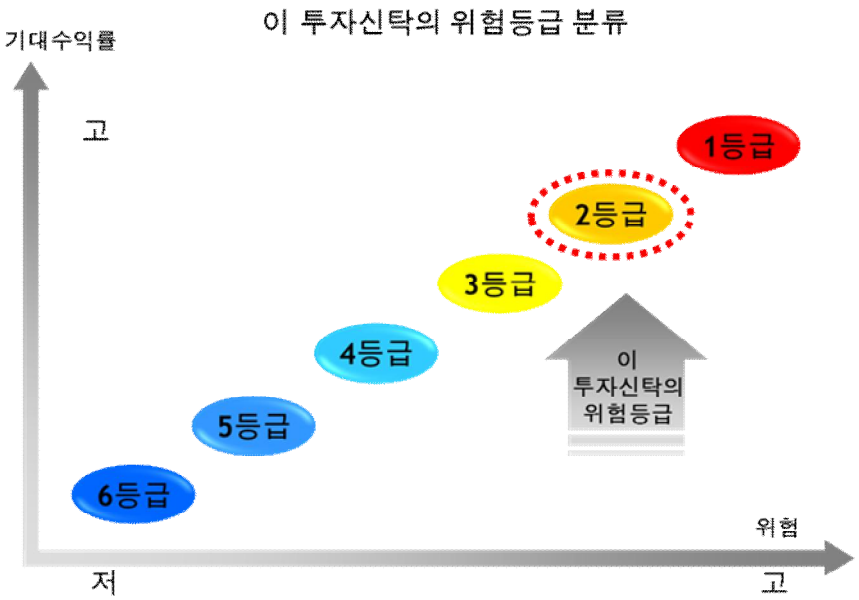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업무수탁자의 불이행 발생 시 이 투자신탁의 운영이 교란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산 보관등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이 투자신탁은 증권을 제값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투자신탁의 환매 중지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32.57%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예상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250) 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가입자격: 제한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D)	3 영업일(D+2)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5) 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40년 미국 투자회사법(이후 개정본 포함)("미투자회사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1933년 미국 증권법(이후 개정본 포함)("미증권법")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한 증권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증권은 미증권법, 해당주의 주법 및 기타 증권법률에 의해서만 모집되거나 매각되거나 달리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미국인은 미증권법에 의한 Regulation S에서 정의된 자를 의미합니다.

(6) 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세금 신고 의무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I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및 IGA 에 따라 투자자가 미국 소유의 非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과 같은 특정인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다른 법령에 비해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별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지급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한 경우: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지급

구분	1 영업일(D)	4 영업일(D+3)	5 영업일(D+4)	8 영업일(D+7)	9 영업일(D+8)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환매수수료) 발생여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여부
X (중도환매 가능)	○	X (환매수수료 없음)

주1)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대금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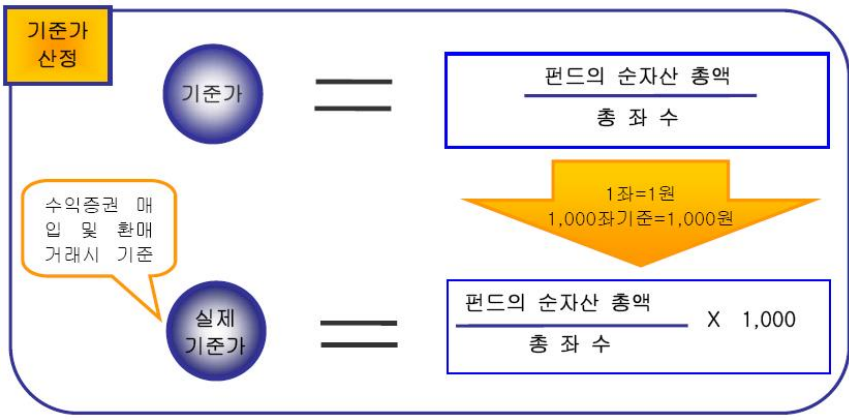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해당 없음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매 영업일 평가시점 현재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즉,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해당 평가시점 현재 기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파생결합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 공통 적용)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동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어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법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아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비 고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 단, 이익금은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평가액에 따른 환매수수료와 실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환매 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은 제 2 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포함)	증권거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투자신탁	0.8900	1.1000	0.0400	0.0150	2.045	0.0108	2.0558	2.1391	0.0045	0.9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비용, 채권평가비용, 부동산감정평가비용, 감사비용, 펀드평가비용, 지수사용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10.01 ~ 2026.09.30]

주2)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10.01 ~ 2026.09.30]

주3)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자비용, 현금담보이자비용 등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기간 중 해당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0
금융비용	0
발행분담금	0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모투자신탁의 보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8	527	757	1,252	2,72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316	544	783	1,299	2,830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 0.08%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 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또는)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4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

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이 투자신탁 단계에 한정되며, 투자신탁이 자산으로 편입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5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수익자는 외국에 세액이 납부된 투자신탁의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투자신탁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국내거주자인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국내거주자인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 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1기 (2025.10.01 ~ 2026.09.30)	삼덕회계법인	확정 전
제20기 (2024.10.01 ~ 2025.09.30)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19기 (2023.10.01 ~ 2024.09.30)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21 기 (2026.09.30)	제20기 (2025.09.30)	제19기 (2024.09.30)
운용자산	39,693,681,356	56,261,275,217	54,916,288,558
증권	38,713,531,643	55,855,924,013	54,515,265,61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80,149,713	405,351,204	401,022,94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494,022	135,108,396	43,953,959
자산총계	39,709,175,378	56,396,383,613	54,960,242,51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27,929,348	281,121,600	181,366,076
부채총계	127,929,348	281,121,600	181,366,076
원본	41,401,093,681	50,175,373,910	54,708,078,200
수익조정금	-3,540,898,700	553,955,324	421,478,556
이익잉여금	1,721,051,049	5,385,932,779	-350,680,315
자본총계	39,581,246,030	56,115,262,013	54,778,876,441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1 기 (2025.10.01 ~ 2026.09.30)	제20기 (2024.10.01 ~ 2025.09.30)	제19기 (2023.10.01 ~ 2024.09.30)
운용수익	16,894,653,204	24,985,958,736	19,551,962,360
이자수익	17,508,755	9,537,977	12,103,361
배당수익	0	0	0
매/평가수익(손)	16,877,144,449	24,976,420,759	19,539,858,999

기타수익	18	0	0
운용비용	-982,417,272	-1,041,946,122	-1,040,470,174
관련회사 보수	-982,417,272	-1,041,946,122	-1,040,470,174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638,276	-1,337,720	-1,468,980
당기순이익	15,909,597,674	23,942,674,894	18,510,023,206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주식의 매매회전율 산출과 관련하여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00	0	0.00	0.00	0.00	32.57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하며 상기의 요약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는 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익 :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1기 0백만원, 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발생)
- 기타비용 :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21기 0백만원, 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발생)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주6)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0.00	0.00	0.00	0.00	0.00	0.0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25,019.18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5,019.18	0.00	0.00	0.00	0.00	0.00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1기(2026.09.30)		제20기(2025.09.30)		제19기(2024.09.3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980,149,713		405,351,204		401,022,946
1. 현금및현금성자산	980,149,713		405,351,204		401,022,946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38,713,531,643		55,855,924,013		54,515,265,612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38,713,531,643		55,855,924,013		54,515,265,612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5,494,022		135,108,396		43,953,95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3,457,312		134,418,896		42,968,524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2,036,710		689,500		985,435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39,709,175,378		56,396,383,613		54,960,242,517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127,929,348		281,121,600		181,366,07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13,289,616		134,418,896		42,968,524	
4. 수수료미지급금	114,639,732		146,702,704		138,397,552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127,929,348		281,121,600		181,366,076
자 본						
1. 원 본	41,401,093,681		50,175,373,910		54,708,078,20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540,898,700		553,955,324		421,478,556	
3. 이월잉여금	1,721,051,049		5,385,932,779		-350,680,315	
(발행좌수 당기: 41,401,093,681 좌	이익잉여금	1,721,051,049		5,385,932,779		-350,680,315
전기: 50,175,373,910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54,708,078,200 좌)						
(기준가격 당기: 956.04 원						
전기: 1,118.38 원						
전전기: 1,001.29 원)						
자 본 총 계		39,581,246,030		56,115,262,013		54,778,876,4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9,709,175,378		56,396,383,613		54,960,242,517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1기(2025.10.01 ~ 2026.09.30 금 액		제20기(2024.10.01 ~ 2025.09.30 금 액		제19기(2023.10.01 ~ 2024.09.30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7,508,773		9,537,977		12,103,361
1. 이 자 수 익	17,508,755		9,537,977		12,103,361	
2. 배당금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18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8,282,140,720		24,976,420,759		19,539,858,999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8,282,140,720		24,976,420,759		19,539,858,999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04,996,271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1,404,996,271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985,055,548		1,043,283,842		1,041,939,154
1. 운용수수료	427,555,638		453,462,777		452,820,491	
2. 판매수수료	528,439,688		560,460,502		559,666,548	
3. 수탁수수료	19,215,979		20,380,335		20,351,459	
4. 사무수탁수수료	7,205,967		7,642,508		7,631,676	
5. 지급수수료	2,638,258		1,337,720		1,468,980	
6. 기타비용	18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5,909,597,674		23,942,674,894		18,510,023,20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		0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10.01 ~ 2026.09.30	501.75	561.15	2.54	2.69	90.28	95.77	414.01	395.81	0.00
2024.10.01 ~ 2025.09.30	547.08	547.79	3.35	3.28	48.68	47.44	501.75	561.15	0.00
2023.10.01 ~ 2024.09.30	594.40	517.03	3.99	3.50	51.31	45.73	547.08	547.7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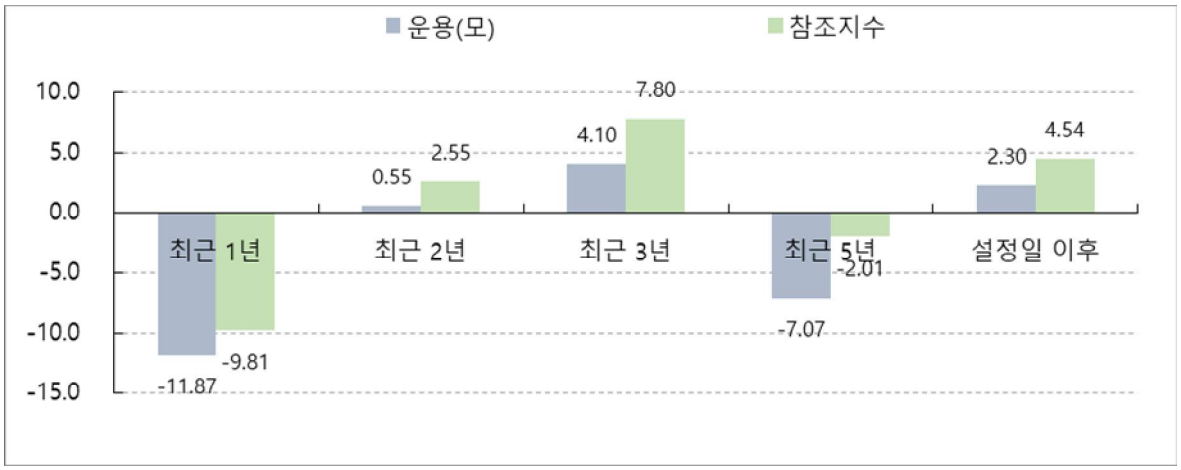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2025.10.19~ 2026.10.18	최근 2년 2024.10.19~ 2026.10.18	최근 3년 2023.10.19~ 2026.10.18	최근 5년 2021.10.19~ 2026.10.18	설정일 이후 2006.02.13~ 2026.10.18
운용(모)	2006.02.13	-11.87	0.55	4.10	-7.07	2.30
참조지수		-9.81	2.55	7.80	-2.01	4.54
수익률 변동성		13.30	14.81	14.69	17.32	20.43

주1) 참조지수: 2023년 04월 18일 이후: MSCI B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21년 10월 29일~2023년 04월 17일: MSCI BR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18년 05월 02일~2021년 10월 28일: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지수 5%
2018년 05월 01일 이전: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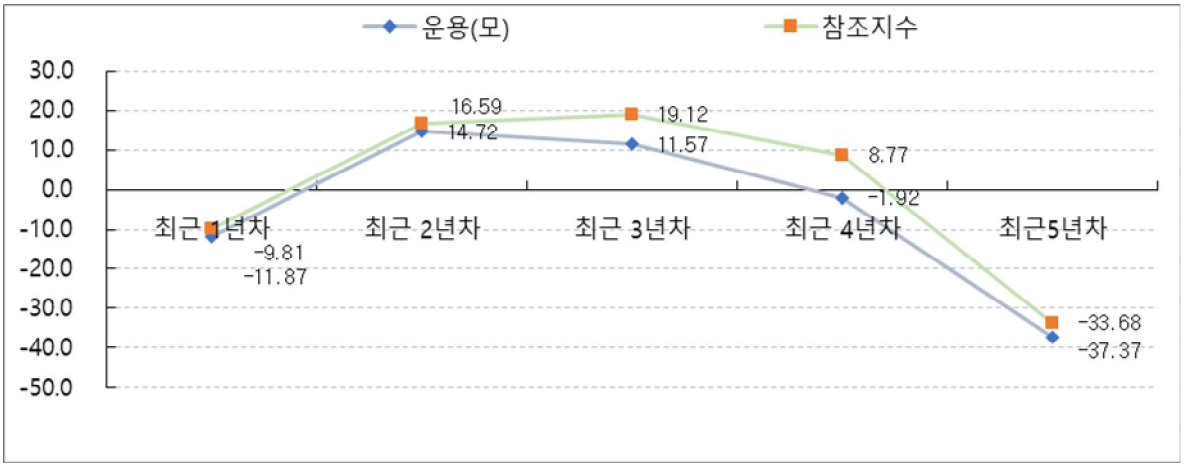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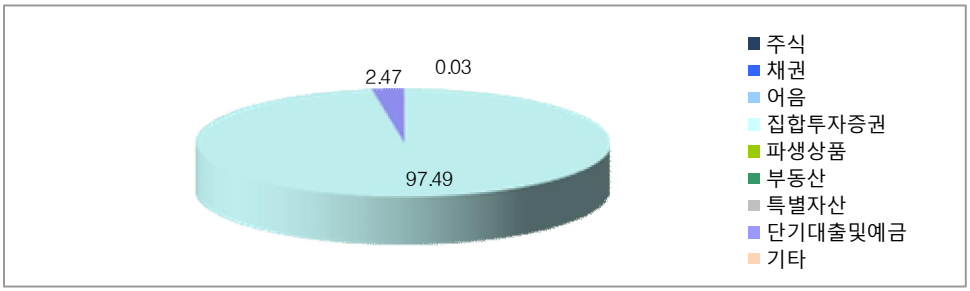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2025.10.19~ 2026.10.18	최근 2년차 2024.10.19~ 2025.10.18	최근 3년차 2023.10.19~ 2024.10.18	최근 4년차 2022.10.19~ 2023.10.18	최근5년차 2021.10.19~ 2022.10.18
운용(모)	2006.02.13	-11.87	14.72	11.57	-1.92	-37.37

참조지수		-9.81	16.59	19.12	8.77	-33.68

주1) 참조지수: 2023년 04월 18일 이후: MSCI B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21년 10월 29일~2023년 04월 17일: MSCI BRIC Net TR Index10/40(USD) 95% + Call 지수 5%
2018년 05월 02일~2021년 10월 28일: MSCI BRIC Net TR Index(USD) 95% + Call지수 5%
2018년 05월 01일 이전: MSCI BRIC Index(USD) 30% + MSCI BRIC Index(원화환산) 70%
주2)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주3)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참조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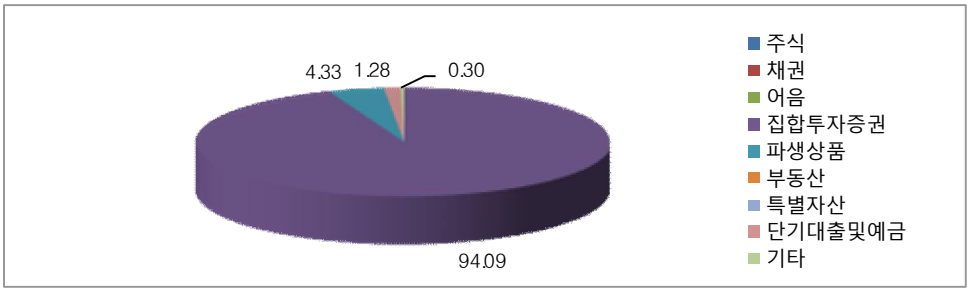
[2026.09.30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387.1	0.0	0.0	0.0	0.0	0.0	9.8	0.1	397.1
	(0.00)	(0.00)	(0.00)	(97.49)	(0.00)	(0.00)	(0.00)	(0.00)	(0.00)	(2.47)	(0.03)	(100.00)
KRW	0.0	0.0	0.0	387.1	0.0	0.0	0.0	0.0	0.0	9.8	0.1	397.1
	(0.00)	(0.00)	(0.00)	(97.49)	(0.00)	(0.00)	(0.00)	(0.00)	(0.00)	(2.47)	(0.03)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5) 상기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모투자신탁 '키움슈로더BIC(브라질,인도,중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한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 키움슈로더BIC(브라질,인도,중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6.09.30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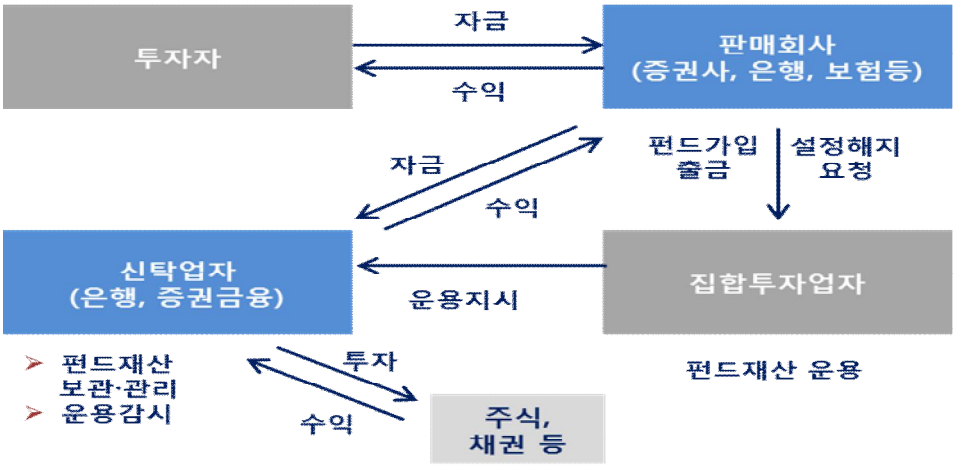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716.6	0.0	33.0	0.0	0.0	0.0	9.7	2.3	761.7
	(0.00)	(0.00)	(0.00)	(94.09)	(0.00)	(4.33)	(0.00)	(0.00)	(0.00)	(1.28)	(0.30)	(100.00)
KRW	0.0	0.0	0.0	0.0	0.0	0.0	0.0	0.0	0.0	9.7	2.3	1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0.84)	(19.16)	(100.00)
USD	0.0	0.0	0.0	716.6	0.0	33.0	0.0	0.0	0.0	0.0	0.0	749.6
	(0.00)	(0.00)	(0.00)	(95.60)	(0.00)	(4.40)	(0.00)	(0.00)	(0.00)	(0.00)	(0.0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라.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 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2025.12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금	8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8(당)기 2025.12.31현재	제37(전)기 2024.12.31현재	구분	제38(당)기 2025.01.01 ~ 2025.12.31	제37(전)기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예치금	29	67	영업수익	1,251	858
증권	2,231	2,245	영업비용	751	630
파생상품자산	-	-	**영업이익**	**500**	**229**
대출채권	36	42	영업외수익	176	84
유형자산	16	22	영업외비용	79	88
사용권자산	91	11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97**	**225**
기타자산	325	365	법인세비용	135	48
자산총계	**2,728**	**2,858**	**당기순이익**	**462**	**176**
예수부채	7	3	기타포괄손익	-	-
리스부채	90	114	**총포괄손익**	**462**	**176**
기타부채	282	182			
파생상품	-	-			
부채총계	**378**	**300**			
자본금	710	710			
자본잉여금	171	171			
이익잉여금	1,469	1,678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총계	**2,350**	**2,559**			
부채 및 자본총계	**2,728**	**2,858**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18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35,325	82,675	5,164	99,500	18,014	51,696	35,251	11,199	116,350	455,17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씨티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신문로 2가) 씨티뱅크센터(02-3455-2114)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A.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서,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 및 신탁계약서상에 명시된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C.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우리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www.woorif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2251-130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시행령제 217 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3)과 (4)에 해당되는 투자신탁에 대해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탁회사 또는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 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법제247조제5항에 정해진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④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

⑤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⑦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⑧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⑨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⑩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⑪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⑫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⑬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펀드(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의 일종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펀드	수익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기간 중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로 펀드의 만기 시점(운용 종료 시점)에 투자금과 운용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 펀드	설정기간 이외에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펀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해당 펀드(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신탁계약서(규약 또는 약관)에서 정한 모펀드에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종류형 펀드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멀티클래스 펀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 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재산을 운용(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판매회사

(신탁보수)	보수) 및 관리(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펀드 가입 및 추가불입(납입)시 판매사에 지급하는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 환매시점에 지불하는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혹은 펀드 설정전에 정한 신탁계약종료 조건이 달성) 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펀드의 만기가 도달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12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 달리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하기 위한 지수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거나 혹은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운용결과가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ESG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ESG"가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에 'ESG'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